

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

2015. 9. 7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○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15년 9월 2일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: 2015년 9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5. 9. 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 : 복지교육국장 구 본 수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

나. 제출내역

○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3. 주요내용

○ 변경사유

- 서울시의 직매립 제로화 및 자치구별 폐기물 감축 목표량 할당 등의 고강도 정책 추진에 따라, 폐기물 감축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우수한 『RFID 개별 종량기』 구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원비를 증액 편성 하고자 함.

(단위: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(변경)	증감	항 목	기정액	지출액(변경)	증 감
합 계	662,540	662,540	0	합 계	662,540	662,540	0
이자수입	17,422	17,422	0	비용자성 사업비	420	257,380	256,960
예치금회수	645,118	645,118	0	예 치 금	662,120	405,160	△256,960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송 인 수)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상암1·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자(SH공사)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및 기금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조성되며,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,
- 서울시의 직매립 제로화 및 자치구별 폐기물 감축 목표량 할당 등의 고강도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청소행정 여건 등의 변화로, 폐기물 감축 (연간 962,000kg) 및 예산 절감 효과(144,300천원 절감)가 우수한 『RFID 개별 총량기』를 상암동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(146대:8,760세대) 운영하고자,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원비를 변경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으로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설치기금 운용 심의회에 의결 (2015. 8. 17)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,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- 다만, 향후 『RFID 개별 총량기』설치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,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확대 및 폐기물 배출감량 통계관리 등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,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 예산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